

국토·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대상 통계 현황 검토와 정책제언: 법무부·행안부 통계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Foreign Resident Statistics for National Territo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이보경 Lee, Bo Kye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tatistics for territorial and regional policy implementation concerning foreign residents and suggests improvements. It analyzes the survey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statistic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Statistics",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s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the Statistics Korea'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Status of Foreign Land and Housing Ownership", and the Statistics Korea-Ministry of Justice's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 The study compares administrative districts level statistics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s "Long-term Foreign Residents" and the Ministry of Interior's "Non-Korean Nationals". The analysis reveals that regional differences stem from variations in statistical compilation methods, such as the inclusion of undocumented residents and the application of a 91-day continuous stay criterion. These difference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metropolitan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overseas Koreans and industrial complexes with numerous undocumented residents. The study suggests guidelines for selecting appropriate statistics and proposes improvements including better undocumented resident statistics, support for various attribute combinations, and new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inter-regional movement.

Keywords: Foreign Resident Statistics, International Migrant Statistics, Long-term Foreign Residents,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Evidence-based Territorial and Regional Policy

I. 서론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외국인 수 증가로 반등하였다. 내국인은 202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이후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에 기

여한 것이다. 2023년 11월 기준,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한 이주배경주민(이하 이주민)의 수는 약 256만 명으로, 이는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의 인구 규모에 해당한다(통계청 2024a).

외국인 규모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장래인구추계(2022~2042)에 따르면 내국인의 수는

* 이 연구는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이보경, 2024. 국토정책 추진을 위한 이주민 통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bklee@krihs.re.kr

감소하고 외국인 수는 증가하여 2042년에는 총인구 중 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4b).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외국인 규모와 비중 증가 속도는 추계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의 지역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 및 지역 정책에서도 이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다양한 특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박세훈, 정소양 2010; 민성희, 안용진, 박정호 2015).

그리고 이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마다 외국인 관련 용어 및 통계 수집 방식이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통계의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박성일 2012; 송다영 2018; 최서리, 유민이, 김영근 2021; 장주영, 허정원 2023). 대표적으로 외국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은 1,881천 명(12월 31일 기준)이고, 행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935천 명(11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두 통계 간의 조사 대상과 시점, 통계표상의 세부 유형 등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별 외국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적절한 통계 선택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토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의 지역별 통계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목적에 따라 알맞은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 각 기관의 통계 산출 방식과 정의가 다르므로 같은 지자체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는 다르다. 통계작성 대상과 산출 방식 등의 차이가 지역별 통계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보다 두 통계 간 차이의 공간적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체계적으로 비교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가장 널리 활용되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외국인 규모 관련 통계 차이를 지자체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토정책 관점에서 외국인 관련 통계의 활용 한계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국토·지역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검토 대상은 중앙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및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이다. 3장에서는 지자체별 외국인 규모 파악을 위한 핵심 자료인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의 설계, 정의 및 지역별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활용방안과 해석상 유의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주민 관련 통계가 국토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II. 외국인 대상 통계 현황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통계보고)에 근거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기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증 발급 단계, 입국 단계, 국내 체류 단계에서 여권 정보를 포함한 각종 신청서 기재 정보, 생체 정보 등을 수집 관리한다(최서

리, 유민이, 김영근 2021). 「체류외국인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통계이다. 체류외국인은 한국 체류 기한이 90일 이하인 '단기체류외국인'과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기체류외국인' 통계 활용이 적절하다. 법무부는 분기별 장기체류외국인을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¹⁾ 유형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도·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관점에서 이 통계가 공표되는 최소 공간 범위를 살펴보면, '등록외국인'은 「읍·면·동」,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는 「시·군·구」로 작성되고 있다. 공표되는 '등록외국인' 통계 유형은 ①지역(시·군·구)-국적-성별, ②지역(시·군·구)-연령-성별, ③지역(시·군·구)-체류자격(대분류)-성별, ④지역(시·군·구)-체류자격(세분류)-성별, ⑤지역(읍·면·동)-연령-성별과 같다. 이 '등록외국인' 통계는 지역별 외국인 현황을 세부적인 체류자격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민자 관련 정책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지역(시·군·구)-국적-성별 및 지역(시·군·구)-연령-성별의 두 유형으로 통계가 공표된다(표 1) 참조.

표 1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통계표

부처	구분 (공표 주기)	통계표 이름	국적	성별	연령	체류 자격	최소 공간범위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 (매월 공표)	체류외국인 통계표 (국적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 체류외국인)	○	○			전국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분기별)	등록외국인(지역별, 국적별) 현황	○	○			시·군·구
		등록외국인(지역별, 연령별) 현황		○	○		
		등록외국인(지역별, 체류자격별(대분류)) 현황		○		○	
		등록외국인(지역별, 체류자격별(세분류)) 현황		○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분기별)	외국국적동포(지역별, 국적별) 현황	○	○		△**	시·군·구
		외국국적동포(지역별, 연령별) 현황		○	○	△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 현황(분기별)	국민의배우자(국적별, 지역별) 현황	○	○		△***	시·군·구	
	국민의배우자(지역별, 연령별) 현황		○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매년 1회)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주민현황		○	○	△****	시·군·구
		읍면동별 유형 및 지역별 외국인주민현황		○		△	읍·면·동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체류기간별(시군구)		○		△	시·군·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국적별(시군구)	△*	○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 경과 기반별(시군구)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이전국적별(시군구)	△				
외국인주민 자녀(시군구) 연령별		○	○				

주: ○는 항목이 자세하게 구분된 것이고, △는 통계작성 시 임의로 설정한 분류에 따라 통계표가 작성된 것을 의미.
 *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국적 구분은 세분되어 있으나, 유럽(러시아, 영국, 기타)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개략적인 구분 또는 국적 구분 없이 통계를 제공.
 ** F-4유형의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유형별(F-4-11, F-4-17 등)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며 세부유형별(F-5-2, F-6-3)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 법무부와 같이 체류자격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유형으로 통계를 제공.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의 빅데이터·통계메뉴와 통계청 KOSIS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1) '국민의배우자'는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F-2-1, F-5-2, F-6-1, F-5-2, F-6-3의 외국인을 별도 통계로 작성한 것.

다만, '체류외국인통계'는 규격화된 통계표(csv)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속성을 조합해서 통계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특히 국토·지역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읍·면·동 단위 '등록외국인' 통계의 경우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속성 중 하나인 체류자격별 유형 구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 통계는 최소 공간단위가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등록외국인' 통계와 통합하여 읍·면·동 단위의 종합적인 지역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장기체류외국인 통계는 불법체류자²⁾가 통계에 포함되어 있어, 합법체류자만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 등록주소를 기준으로 외국인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의 지역 이동을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지역별 불법체류자 규모 산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안부는 2006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별·유형별·국적별·연령별 현황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작성·공표해왔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작성 방식이 등록센서스로 변경되면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공동협의를 통해 용어 개념과 통계 조건을 재정의하고,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주민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관련 데이터를 추출·생성하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협의·검증 과정을 거쳐 통계가 공표된다(행정안전부 2024). 따라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상호보

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통계는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계 유형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다문화가구'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로 국적, 성별, 체류유형, 연령 등에 따른 세부 통계가 제공된다. 특히 행안부 통계는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와 달리 귀화자도 포함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유형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91일 이상 장기체류자 또는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도 통계작성 대상에 포함한다. 이때 지역별 불법체류자 규모는 지역별 국적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에 따라 전체 불법체류자를 배분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국토·지역 정책 활용 관점에서 이 통계가 읍·면·동 단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표 1〉 참조). 다만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연령별(10세)-성별 세부 통계는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고, 읍·면·동 단위 통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다.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기본통계조사이다. 2015년도부터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현장조사가 없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가공통계를 생산·공표하고 있으며, 이 자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작

2) 최근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미등록 체류상태' 또는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체류자격위반자' 등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제안되고 있음(이춘희 2025). 다만 이 연구에서 참조한 중앙부처 통계보고서 및 통계 설명자료에서는 '불법체류'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체류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지칭함.

성에 활용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내국인과 구분하여 이주민을 선별·분석할 수 있는 항목은 국적, 입국 연월, 국적취득연도(2017년부터 공표)이다.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는 지역별 외국인 규모와 거주 여건을 파악하여 국토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설계 시 시도보다 더 세분화된 지역 단위를 고려하지 않아, 정밀한 지역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 MDIS³⁾의 인가용 데이터셋(전수조사 및 표본조사)을 활용하면 읍·면·동 단위에서 거주 종류, 주거용 연면적 등 거주 여건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표본설계 등의 문제로 인해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외국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본조사(20%) 데이터에 읍·면·동 단위 설계 가중값을 적용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항목에 결측치가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 조사는 현재 거주지역과 1년 전 거주지역(국내 시·군·구 및 해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적별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측치로 인해 해당 데이터가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외국인(193만 5,150명) 중 현재 거주지역과 1년 전 거주지(국내)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수는 27만 6,998명(14.31%), 1년 전 거주지(해외 또는 미상) 외국인 수는 8만 3,096명(4.29%), 그리고 1년 전 거주지 항목이 결측인 외국인 수는 157만 5,056명(81.40%)이다. 따라서 등록센서스로 연계된 행정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집계할 때 결측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토지현황’과 ‘외국인주택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는 1년에 2회 반기별로 공표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토지와 주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작성하여 관련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과 등기정보자료상 법인등록번호 구성이 외국법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대상 통계와 다르게, 국내 체류 여부 및 자격과 상관없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국내 법인이 아닌 경우를 외국인 소유 부동산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외국인토지현황’은 1998년 국내 부동산 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이 원칙적 신고제가 되면서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작성이 시작되었다(국토교통부 2023).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지적과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고 허가되면, 지자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주민행정시스템, 지방세관리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및 대법원등기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토지 특성상 소재지가 분명하고 자료 수집을 시·군·구청에서 수행하지만, 통계는 17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류되어 공표되며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우려가 있어 마이크로데이터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주택소유현황’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2023년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되었다. 통계 대상은 기준일 당시 외국인 소유주택이며, 전국 시·군·구 단

3)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연계 및 이상치 검증을 통해 통계 DB를 생성하고, 집계하여 매년 5월(직전년도 12월 말 기준)과 11월(직전년도 6월 말 기준) 통계를 공표한다.

통계의 지역단위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토지현황’은 시·도 ‘외국인주택소유현황’은 시·군·구로 공표되고 있다. ‘외국인토지현황’ 통계의 최소 공간 단위를 시·군·구로 정밀화하여 ‘외국인주택소유현황’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⁴⁾

해외인력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체류현황, 생활여건, 고용상태, 사회통합 등 이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국내거주이민자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7년부터 통계청·법무부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의 관련 통계는 대상이 되는 외국인 전수를 포함하는 보고·가공통계인 반면,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층화추출로 표본을 구성하는 조사통계이다.

조사 내용은 모든 체류자격에 대한 전체 표본 대상 공통항목과 비전문취업,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 및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공통항목 중 기본항목은 매년 조사하되, 구직경험, 소득과 소비, 보건, 자녀교육 등 실태와 같은 항목은 홀수와 짝수로 조사항목을 구분하여 2년 주기로 시행한다. 그리고 특성항목은 체류

표 2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설계와 항목

구분	대상	주기	조사 항목	세부 내용
공통 항목	전체 표본 (25,000명)	매년	기본항목	성별, 나이, 출생지, 국적, 교육 수준, 자녀, 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 및 임차료 등
			고용 I	주업과 부업, 취업 시간, 직업, 월평균 임금 등
			한국어 능력	한국어 학습 경험, TOPIK 인증서 유무 등
			체류사항	첫 입국 시점, 총 체류 기간, 체류 자격 등
		홀수년	고용 II	취업 경로, 보수 및 근로시간 만족도 등
			구직경험	구직 활동 경험, 구직 중 어려움
			교육	최근 1년간 수강한 업무 관련 교육 여부 등
			소득과 소비	1개월 총소득, 지출, 해외 송금 여부 등
		짝수년	보건	건강 상태,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한국 생활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 활동 및 만족도 등
			자녀교육	교육에서의 어려움, 참여도, 교육비 부담 등
			주거 및 생활 환경	최근 1년간 이사 유무, 거주지 이전 이유
특성 항목	비전문취업 (E-9) 유학생 (D-2 등)	홀수년	고용 및 근로 환경	한국 선택 이유, 근로 계약 조건 인지 여부, 직장 변경 횟수와 사유 등
			교육 및 생활 경험	유학 결정 이유, 전공, 유학생활 어려움, 학비 마련 방법, 졸업 후 계획
	재외동포 (F-4) 영주권자 및 귀화허가자	짝수년	체류 및 사회적 환경	한국 체류 이유, 체류 정책 및 취업 제도 만족도, 밀집지역 선호 여부 등
			사회적 통합 및 지위	한국 사회에 대한 융화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자식세대에 대한 기대 등

자료: 통계청(2023, 8-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통계청(2023)을 참조로 작성.

자격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화문항을 구성하여 2년 주기로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통계추정을 위한 설계 가중값을 설정할 때 외국인의 경우 특·광역시 및 시도로 구분한 17개 지역층, 귀화허가자의 경우 성별과 8대 권역으로 구분한 16개 층을 적용한다.⁵⁾ 표본추출 시 귀화자의 경우 8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강원·제주)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통계청 MDIS 공공용 데이터셋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을 17개 시·도가 아닌 8개 권역으로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MDIS의 인가용 데이터셋에서는 17개 시·도까지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귀화자가 아닌 외국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결과를 시·도보다 더 작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조사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임차료 등의 정보와 소득과 소비,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및 시·군 단위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임금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어 분석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 생산 가능 연령대의 내국인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외국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외국인의 지역별 경제활동 실태를 보다 정밀한 수준의 지역 단위와 상세한 조사 항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마련된다면, 해당 통계는 정책 수립 및 지역 연구에 있어 매우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질 것이다.

Ⅲ. 지역단위의 외국인통계 검토

1. 검토 대상 정의

국도·지역 정책과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지역별 외국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이 활용될 수 있다. 실례로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상주인구 추정 시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는 목표연도 상주인구를 「상주인구 = 내국인의 자연적 증감 규모 + 사회적 증감 규모(외국인, 군인인구 등)」와 같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목표연도의 외국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과거추세에 따른 수리적 방법을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통계는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조사 시점(매년 11월 1일 기준) 당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통계」가 지역의 외국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계이자 체류자격을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서 행안부 통계를 지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별도의 검토 없이 행안부 통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작성하는 통계의 조사 대상과 정의를 검토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두 통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비교·분석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발

5) 2021년까지 이상추출로 1상에서는 층화단순임의추출(시·군·구)하고 2상에서는 층화계통추출(외국인/귀화허가자)로 실시하였으나, 과대 가중값 문제와 이민자 특성별 포함률 차이를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 층화계통추출로 변경.

생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지역에 따라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두 통계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외국인 관련 국토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정의 비교

법무부와 행안부의 통계는 모두 외국인의 국적, 성별, 연령 등 주요 속성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두 부처의 통계 작성 목적과 방법이 상이하여 정책 수립 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명수 2023, 351). 선행연구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를 비교하기 위한 외국인 분류를 참조하여(송다영 2018, 139), <표 3>과 같

이 외국인의 구성을 단기체류외국인(합법체류, 불법체류), 장기체류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무비자⁶⁾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을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어떻게 통계 작성에 활용하는지 실제 통계값과 같이 비교한 것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최신 통계 기준 행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193만 5,150명)와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188만 1,921명) 간에는 약 5만 3천 명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통계의 집계 시점이 다르다. 행안부는 2023년 11월 1일을, 법무부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체류기간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91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을 포함하는 반면, 법무부는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

표 3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비교를 위한 외국인 구분

단기체류외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무비자
합법체류	불법체류 (기간 도과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등록외국인 (국민의배우자 포함)	승무원을 포함한 무사증입국자
㉑	㉒	㉓ (합법체류+불법체류)	㉔ (합법체류+불법체류)	㉕ (합법체류+불법체류)

주: 이 표에서는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체류도 구분에 포함시켰음.
자료: 송다영(2018)의 <그림 4-1>을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표 4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구성 및 값 비교

(단위: 명)

구분	법무부 체류외국인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장·단기체류	외국국적 동포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범위	㉑+㉒+㉓+㉔+㉕ 일부* * 무비자 유형 중 사증면제(B-1)과 관광통과(B-2)는 단기체류통계에 포함	㉑	㉒	㉓ 일부 (F-2-1, F-5-2, F-6-1, F-5-2, F-6-3)	㉑+㉒+㉓ *행안부 통계의 기타외국인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를 포함				
통계	2,507,584	533,295	1,348,626	470,250	180,072	206,329	410,972	667,527	
		장기체류: 1,881,921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935,150					

주: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6) 무비자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와 같이 사증면제 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를 의미함(송다영 2018, 139).

인은 실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셋째, 불법체류자 포함 범위가 다르다. 행안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를 '기타' 항목에 포함하는 반면, 법무부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만을 통계에 포함한다.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국도·지역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이슈는 '기타'로 분류된 외국인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체류 목적 등 현황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데, 행안부 통계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세분화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내용도 기타로 분류해버린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타'로 분류된 이주민은 약 6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1/3을 차지한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중 'D1(문화예술), D3(기술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8(계절근로), F1(방문동거), F3(동반), G1(기타), H1(관광취업)' 등은 행안부 통계에서 '기타'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E-9(계절근로)의 경우 그 체류기간 상한이 확대되어 큰 성장폭을 보인다. 개념상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체계에서는 E-8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을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단기체류 기간 도과자는 28만 3,687명(법무부 통계 2023 기준)이며, 행안부에서는 이들을 '기타'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두 통계 간의 정의와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이러한 차이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검토된 바 없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과 행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간의 차이는 약 5만 3천 명이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이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두 부처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통계의 지역별 차이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3. 시·군·구 단위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값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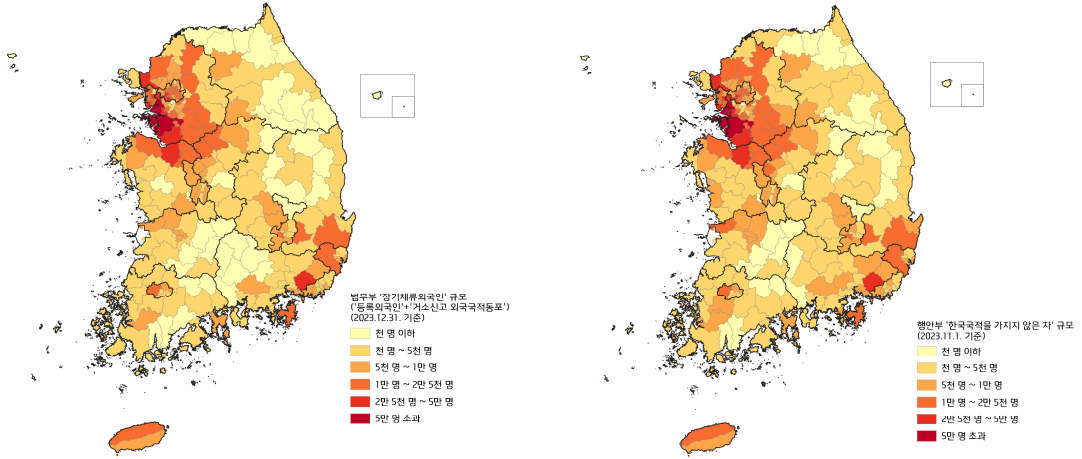
2023년 12월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과 2023년 11월 기준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통계표에서 제시한 시·군·구 명칭에 따라 결합하여 지역별 현황과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통계에서 제시한 지역별 외국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장기체류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6만 7,841명), 경기도 시흥시(6만 5,488명), 경기도 화성시(5만 9,091명) 순이며 가장 작은 지자체는 경상북도 울릉군(194명)이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6만 5,652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6만 5,309명), 경기도 시흥시(6만 2,101명) 순이며 경상북도 울릉군(230명)이 가장 적다.

'장기체류외국인'(법무부)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행안부) 규모의 지역별 비교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250개 시·군·구 중 붉은 계열의 범례로 표시된 약 80%에 해당하는 지자체(196개)에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수가 '장기체류외국인' 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란색 계열의 범례로 표시한 지자체의 경우 '장기체류외국인'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보다 큰 곳이다. 이와 같은 두 통계의 차이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는 행안부가 집계한 외국인 수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약 400명 많지만(행안부: 1만 9,353명, 법무부: 1만 6,442명), 서귀포시는 반대로 약 400명 적다(행안부: 9,471명, 법무부: 9,870명).

그림 1 전국 250개 시·군·구의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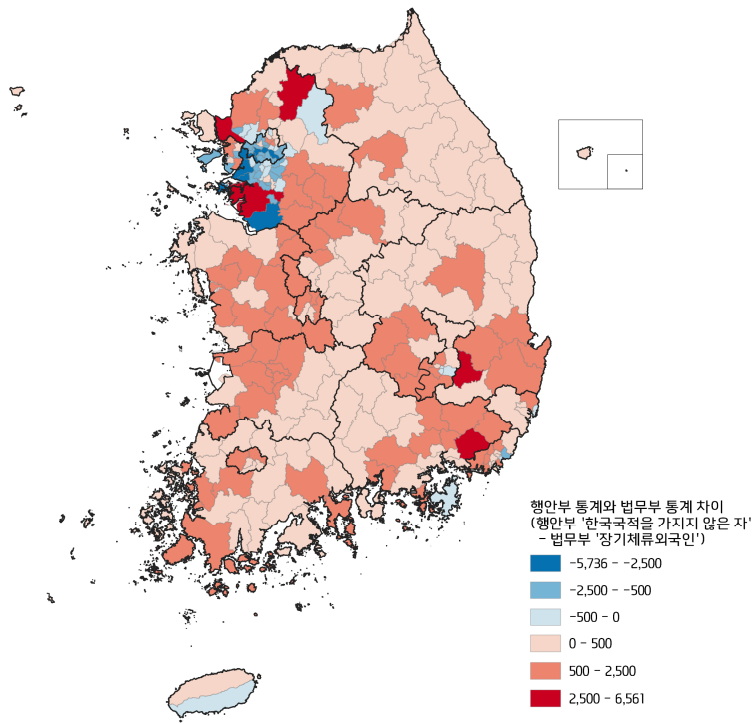
a.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시·군·구 현황

b.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시·군·구 현황



주: a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통계」 중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한 결과, b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지도로 구성한 것임.

그림 2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와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규모의 지역별 비교



자료: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법무부 '등록외국인'와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합인 차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두 부처의 통계 차이가 큰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세부 유형별 차이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표 5 참조). 먼저 행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보다 큰 대표적인 곳은 경기도 화성시로 두 통계의 차이가 약 6천 5백 명이다('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6만 5,652명, '장기체류외국인': 5만 9,091명).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차이가 큰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이다('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3만 0,195명, '장기체류외국인': 2만 6,687명).

행안부 통계 법무부 통계보다 더 큰 두 사례 지역의 경우 '기타'로 분류된 외국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표 5 참조). 행안부는 단기체류자 중 91일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 규모를 포함하고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데, 이들이 포함된 행안부 '기타' 유형 외국인 수가 화성시는 약 2만 명, 김해시는 약 1만 명이기 때문에 행안부 통계값이 법무부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체류지를 파악할 수 없어 행안부에서는 지역별 국적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에 따라 전체 불법체류자를 배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이 행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보다 큰 대표적인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 또는 광역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장기체류외국인'(4만 8,621명)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4만 2,885명)보다 약 5천 7백 명 많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도 '장기체류외국인'(4만 8,259명)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4만 3,237명)보다 약 5천 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안부는 '기타' 유형을 통해 법무부보다 통계작성 대상 외국인을 더 넓은 범주로 정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더 큰 통계 수치를 보인다. 그런데 수도권과 일부 특·광역시에서 법무부 통계가 더 크게 나타난 주요 배경으로 91일 이상 연속체류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 91일 이상 연속체류를 해야 통계작성에 포함되지만, 법무부는 체류자격만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법무부 통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54개 지자체의 경우 91일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체류자격-체류지역별 평균 체류 기간과 같이 직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두 부처 간의 통계

표 5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차이가 큰 지자체의 세부 유형별 비교

(단위: 명)

지자체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수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수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행안부)법무부 경기도 화성시	45,334	13,757	28,806	4,546	864	11,182	20,254
	5만 9,091		6만 5,652				
(행안부)법무부 경상남도 김해시	21,425	5,262	11,108	2,115	1,693	4,476	10,803
	2만 6,687		3만 0,195				
(법무부)행안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3,006	25,615	6,846	2,364	896	20,639	12,140
	4만 8,621		4만 2,885				
(법무부)행안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23,246	2,5013	6,751	2,768	570	20,482	12,666
	4만 8,259		4만 3,237				

주: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차이의 지역적 패턴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지자체별 두 부처 통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을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단기체류자 중 기간 도과 불법체류자의 포함 여부이다. 행안부 통계는 90일 이하 체류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한이 지난 불법체류자들을 '기타'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이때 불법체류자 수는 지역별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행안부와 법무부 집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91일 이상 연속 체류 기준의 적용 여부이다. 행안부는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조사 시점(11월 1일) 기준으로 91일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통계에서 제외된다. 반면 법무부는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실제 연속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모두 통계에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처럼 출입국이 빈번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잦은 출입국을 필요로 하는 직종 종사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두 부처의 통계 간에 큰 차이가 있다.

IV. 결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서 외국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통합과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지역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중앙부처의 외국인 대상 통계 활용과 그 한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제시해 왔으나(박성일 2012; 송다영 2018; 최서리, 유민이, 김영근 2021; 장주영, 허정원 2023; 김명수 2023), 국토·지역 정책 추진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주요 외국인 관련

통계들의 특성과 지역분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별 이주민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의 '장기체류외국인'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시·군·구 단위로 심층 비교한 결과, 통계의 조사설계와 지역별 외국인 구성의 차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한 통계적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지역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통계의 특성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목적에 맞는 적절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군·구 단위로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의 통계값을 비교했을 때, 두 통계에서 제시한 지역별 이주민 규모가 모두 다르므로 분석 목적에 따라 두 부처의 통계 정의를 살펴보고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행안부 통계의 경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함께 '귀화자'와 '외국인주민자녀'의 현황도 공표하고 있어, 정책의 대상을 전체 이주민으로 확대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이다.

그리고 법무부 통계는 시·군·구 단위에서 체류자격, 국적과 같은 속성을 상세하게 공표하고 있어 지역의 산업, 교육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자료로 유용하다. 시·군·구 단위의 통계 분석 시에는 두 통계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두 통계를 결합하여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귀화자와 외국인의 체류자격 정보를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한편,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체류자 통계와 합법체류자 통계를 분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법무부 2024), 이들에 대한 실제 거주지 정보가 부정확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은 마지막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 통계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행안부는 단기체류외국인 중 91일 이상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와 장기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를 '기타'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는데, 지역별 현황은 그 지역의 국적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의 할당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불법체류를 포함하여 지역별 현황 통계를 공표한다면 실제 지역의 합법체류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현행 통계와 함께 이들을 제외한 합법체류자 대상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속성 조합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사전에 정의된 속성 조합에 따라 외국인 관련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목적별로 속성을 조합하여 통계를 추출할 수 없다. 향후 공간 단위(시·도, 시·군·구, 읍·면·동)와 국적, 체류자격(비자), 연령 및 성별 등의 속성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형태로 통계 제공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가 읍·면·동 단위 '등록외국인' 통계를 체류자격 등 속성으로 구분해서 제공하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때 여러 속성을 교차하여 데이터 추출 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비식별화 처리 방법 중 외국인 대상 통계 작성에는 국적, 연령 등을 범주화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범주화 방법이나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거나 특정 기준 아래 통계값에 대해서는 특정 숫자 값을 제공하는 등의 데이터 마스킹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원천데이터 구조와 통계의 분포를 고려하여 검토단계와 비식별 조치, k-익명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국인 대상 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플로우(flow) 통계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지역 유입을 도모하지만, 이들의 국내 지역 간 이동 패턴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 간 이동 통계를 활용하면 어떤 지역이나 거주환경이 이주민 유입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외국인 통계 현황 분석과 제시한 개선 방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도·지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활용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외국인의 지역 정착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References

1. 국토교통부. 2023. 외국인토지현황 통계정보보고서(2023. 6.). <https://www.k-stat.go.kr/comb100/file-download?fileDnKey=nwzhbayMAcJ1rwaCvpDecVvspMU17%2FeU%2BKrOpVsXonI%3D> (2024년 11월 1일 검색).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3. Statistical Report of Status of Foreign Land and Housing Ownership(2023.6.). <https://www.k-stat.go.kr/comb100/file-download?fileDnKey=nwzhbayMAcJ1rwaCvpDecVvspMU17%2FeU%2BKrOpVsXonI%3D> (accessed November 1, 2024).
2. 김명수. 2023.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한양법학* 34권, 3호: 323-359.
Kim Myung-Su. 2023. The migration policy and future task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Hanyang Law Review* 34, no.3: 323-359.

3. 민성희, 안용진, 박정호. 2015. 인종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특성. 국토연구 87권: 115-130.
Min Seonghee, Ahn Yongjin and Park Jungheo. Spatial Distribution of Ethnic Enclaves in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87: 115-130.
4. 박성일. 2012. 국내 외국인(이민) 통계 현황. IOM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no. 2012-01.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Park Seongil. 2012. Korea's Migration Statistics Systems. IOM MRTC *Statistical Brief Series*. no.2012-01. Goyang: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5. 박세훈,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권: 59-76.
Park Sehoon and Jung Soyang. 2010.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popul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64: 59-76.
6.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578969/artclView.do> (2024년 10월 5일 검색).
Ministry of Justice. Regional Status of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December 2023).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578969/artclView.do> (accessed October 5, 2024).
7. _____.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578970/artclView.do> (2024년 10월 5일 검색).
_____. Regional Status of Marriage Migrants (December 2023).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578970/artclView.do> (accessed October 5, 2024).
8. _____.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578971/artclView.do> (2024년 10월 5일 검색).
_____. Status of Overseas Koreans' Local Residence Registration. (December 2023).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7/578971/artclView.do> (accessed October 5, 2024).
9. _____. 2024.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ODQ3NDYlMkZhcncRjBFB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l2YmJzQ2xTZXEIM0QlMjZyZ3NFbmk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IM0RmYWxzZSUyNnBhZ2UIM0QxJTl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TjNEJTl2> (2024년 10월 5일 검색).
_____. Yearbook of Korea Immigration Statistics 2023.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glMkY1ODQ3NDYlMkZhcncRjBFB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l2YmJzQ2xTZXEIM0QlMjZyZ3NFbmk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IM0RmYWxzZSUyNnBhZ2UIM0QxJTl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TjNEJTl2> (accessed October 5, 2024).
10. 송다영. 2018. 공표기관별 외국인·다문화 통계 비교 연구. 대전: 통계개발원.
Song, Da-young. 2018. *A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and Multicultural Statistics by Publishing Institutions*. Daejeon: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11. 이춘희. 2025. 국내 체류자격 위반자 관련 정책 동향과 과제. 법정책이슈브리핑 제2024-4호. 서울: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Lee, Chun-hee. 2025. Policy Trends and Challenges Regarding Violators of Domestic Residency Status. *Legal Policy Issue Briefing*, no.2024-4. Seoul: Jipyung Leg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Jipyung Public Policy Solutions Center.
12. 장주영, 허정원. 2023. 근거 기반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이주민 대상 통계 검토. 공간과 사회 33권, 3호: 97-125.
Jang Juyoung, Huh Jungwon. 2023. The review of statistics on immigrants to inform the evidence-based immigration policy.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33, no.3: 97-125.
13. 최서리, 유민이, 김영근. 2021. 이민분야 공공데이터 현황과 빅데이터 구축과제: 법무부 데이터와 고용·교육 데이터 연계를 중심으로. MRTC 정책브리프시리즈 2021-01.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Choi Seori, Yoo Min Yi and Kim Young Geun. 2021. Current State of Open Data and Challenges to Establish Big Data in a Migration Field: A focus on the data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data of employment and education. *MRTC Policy Brief Series*, no.2021-01. Seoul: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14. 통계청. 2023.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https://www.k-stat.go.kr/metasvc/msea100/statsdcda-a-popup?statsConfmNo=920018 (2024년 11월 1일 검색). Statistics Korea. 2023. Statistical Report of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20. https://www.k-stat.go.kr/metasvc/msea100/statsdcda-a-popup?statsConfmNo=920018 (accessed November 1, 2024).
15. _____. 2024a.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46만 명, 총인구 대비 4.8%, 역대 최다, 10월 24일. 보도자료.
_____. 2024a. Foreign Residents in Korea Reach Record High of 2.46 Million, Accounting for 4.8% of Total Population. October 24. Press release.
16. _____. 2024b.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4월 11일. 보도자료.
_____. 2024b.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Residents Based on 2022 Future Population Estimates: 2022-2042. April 11. Press release.
17. 행정안전부. 202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0월 24일. 보도자료.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4. Current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2023. October 24. Press Release.
-
- 논문 접수일: 2024. 12. 24.
 - 심사 시작일: 2025. 2. 4.
 - 심사 완료일: 2025. 2. 25.

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관련 국도·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 주요 통계의 조사 방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별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과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시·군·구 단위에서 통계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통계값의 차이는 불법체류자 포함 여부와 91일 연속 체류 기준 적용 등 통계 작성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외국국적동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과 불법체류자가 많은 산업단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 목적에 맞는 통계 선택과 분석 방법 그리고 해석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 기반의 외국인 대상 국도·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불법체류자 통계 개선, 다양한 속성 조합의 통계 추출 지원,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통계 신규 작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대상 국도·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외국인통계, 이주민통계, 장기체류외국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증거 기반 국도·지역정책

